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공포 제2025- 10호(개정 202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 범위 및 기준 등), 장안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6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입학생의 자퇴·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2. 전과생의 전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본 대학에 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4. 편입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5. 국내외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
6.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인정
7. 본 대학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8. K-MOOC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9.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3조(인정기준) ① 학점인정의 교과목 이수 단위는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은 본 대학이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학점인정은 객관적 확인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동일 교과목, 유사 교육 내용을 토대로 중복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미 인정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이 자퇴·제적 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5조(전과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5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만, 폐과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점인정 신청 및 절차)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설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학점 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② 학점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세부 인정 절차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따른다.

③ 학점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해 제7조 및 제11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그 외에는 기말고사 종료 후 1주 이내에 처리하고 성적에 반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년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

② 전적대학에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2. 학생: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1호],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수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

3. 학과: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담당 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4. 교무처: 학점인정 신청 사항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처리하고 학과에 통보
 5. 학과: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및 학사관리 지도
- ③ 교과목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 등 유사과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서 또는 유사과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도 반드시 해당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해당 학기에 기록한다.
 - ⑤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이 승인된 교과목의 수업(과제, 시험 포함)에 출석하지 않으며,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⑥ 인정 학점 수는 해당 수강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이수한 전적대학 동일 교과목의 학점이 해당 수강 교과목의 학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적대학의 취득학점만 인정한다.
 - ⑦ 성적은 P 또는 F로 부여하고, 신청하는 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제8조(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①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졸업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6.)

② 편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적대학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양으로 인정한다.
2.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한 학과에서 전공으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3.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되, 본교 교육과정의 선택과 동일 유사한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학과심사 안내
2. 학생: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2호],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수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
3. 학과: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심사 진행 및 심사 결과를 학과장 확인을 거쳐 교무처 제출
4. 교무처: 학점인정 심사결과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 처리하고 학과에 통보
5. 학과: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및 학사관리 지도

④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단위가 본교와 상이할 때는 전적 대학 학점단위로 적용하고, 전적대학에서 성적표시가 본교와 상이할 때는 본교 성적평가 기준에 따른다.

⑤ 편입생의 인정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⑥ 편입생의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성적증명서에 교양선택(학점), 전공선택(학점), 일반선택(학점), 합계(학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9조(국내의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를 통한 취득학점 인정) ① 국내의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를 통해 수학한 학점을 해당 학생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수학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 또는 관련 부서: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 교과목 개설 보고 및 수강 안내

2. 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학
3. 학과 또는 관련 부서: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결과 확인
4. 교무처: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 교과목 학점인정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 처리하고 학과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5. 학과 또는 관련 부서: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 ③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는 수강학점은 본 대학에서 정한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 ④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명, 이수구분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이수결과에 따라 P 또는 F로 부여하고, 신청하는 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제10조(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 ① 軍(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복무 관련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군 제대 후 복학하여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3호]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2. 학과: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3. 교무처: 학점인정 신청사항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 처리하고 학과에 통보
4. 학과: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 ③ 군 복무 관련 학점인정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6.1.6.)
- ④ 성적은 P 또는 F로 부여하고, 신청하는 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제11조(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인정) ① 본 대학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소속 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서 인정하는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 안내
2. 학생: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4호],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해당학기 수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
3. 학과: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담당 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4. 교무처: 학점인정 신청사항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처리하고 학과에 통보
5. 학과: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및 학사관리 지도
- ③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도 반드시 해당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해당 학기에 기록한다.
- ④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이 승인된 교과목의 수업(과제, 시험 포함)에 출석하지 않으며,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⑤ 동일한 자격증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동일 교과목에 2개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 ⑥ 성적은 P 또는 F로 부여하고, 신청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제12조(K-MOOC 이수과목 학점인정) ① 본 대학 재학 중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로 함)에서 제공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K-MOOC 이수과목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지원센터: K-MOOC 이수 강좌 학점 인정 신청 안내
2. 학생: K-MOOC 개설강좌 수강 및 이수 후 매 학기말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5호] 및 증빙서류 제출
3. 학과: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
4. 원격교육지원센터: 학과별 K-MOOC 이수 강좌 학점 인정 신청 내역 학점인정 협조 요청
5. 교무처: 학점인정 신청사항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처리하고 학과 및 원격교육지원센터에 통보

6. 학과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③ 교과목당 학습인정시간이 325분(1회차 25분, 13주분) 이상인 경우 과목당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

④ K-MOOC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2년제(1학점), 3년제(2학점)으로 한다.

⑤ 성적은 P 또는 F로 부여하고, 신청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제13조(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① 본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 신청대상은 성인학습자과정 또는 성인학습자과정 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 입학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학점 이내
2. 재직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4학점 이내
3. 재직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6학점 이내
4. 재직기간 4년 이상: 8학점 이내

③ 산업체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③ 산업체 근무경력 관련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 안내
2. 학생 :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6호] 및 증빙자료 제출
3. 학과: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4. 교무처: 학점인정 신청사항 검토 및 보고하여 총장 승인 후 인정 결과를 확정처리하고 학과에 통보
5. 학과: 학점인정 승인결과 학생 통보 및 학사관리 지도

④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제1-3호]
2.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3. 산업체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⑤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학점은 성적증명서에 교양선택(학점), 합계(학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4조(기타) 학점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점인정 기준 (개정 2026.1.6.)

구분	학점인정범위		이수구분	성적 기재방법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포함여부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	졸업학점의 1/2 이내	개설과목 이수구분에 따름	P/F	포함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학기당 18학점 이내	-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이수구분에 따른 인정 학점 수	미포함
국내외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학점교류를 통한 취득학점 인정	협약으로 정한 범위	졸업학점의 1/2 이내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P/F	포함
군 복무 관련 학점 인정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2학 점 이내		졸업학점의 1/4 이내	교양선택 전공선택	P/F
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 인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		개설과목 이수구분에 따름	P/F	포함
K-MOOC 이수과목 학점 인정	2년제 : 1학점 이내 3년제 : 2학점 이내		교양선택	P/F	포함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 인정	8학점 이내		교양선택	이수구분에 따른 인정 학점 수	미포함

※ 각 학점인정 항목은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